

손해사정서

THE CLAIM ADJUSTMENT REPORT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본 사정서 양식은 보험업법 제178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정회원 손해사정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정서 표지의 모든 저작권은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에 있으므로 허가없이 복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회의 정회원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07238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18 오성빌딩 304호 T.1833-6051 F.(02)6455-6051

◆ 담당 신체손해사정사 정승협[손사 제BD00001378호] H.P.

(인)



수 신 : (주)00000000

25. 00. 00

참 조 : 000 대표님

제 목 : 피재근로자 손해배상 건에 관한 손해사정서 제출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지안손해사정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손해사정법인으로 보험업법 제 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의거하여, 손해사정당사자인 000(000000 - 1*****)의 사용자 (주)000000 측의 요청으로 민법 제390조 및 동법 제750조에 근거한 손해배상금과 관련하여 손해사정을 위임받아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3. 본 손해사정서는 보험업법 제204조4항에 의하여 대법원 및 각 하급심 판례 중 정형화된 사항과 본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소득 등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반대의 증거가 제시될 경우 산출한 금액 및 결과는 정식 재판에 의할 경우 달라질 수 있으며, 재판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상기 법률상 손해액에서 소송경제확상 이익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지안손해사정법인



JIAN CLAIM ADJUSTMENT



- 목 차 -

I. 산출 근거 및 사정액

- 손해사정 근거
- 손해액 사정금액

II. 수임사항

- 손해사정업무의 수임계약사항

III.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

IV. 관계법규 및 보상책임의 판단

V. 손해사정 의견





I. 산출 근거 및 사정액

1. 산출근거

- 1) 민법
- 2)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 3) 유사 판례 등

2. 손해배상액 산출 사정액

소가기준			
계정	산재급여지급액	민사책임액	비고
위자료	0 원	7,840,000 원	
휴업손해	19,551,680 원	5,156,474 원	차액 0 원
상실수익액	12,223,810 원	49,640,295 원	차액 37,416,485 원
간병비	0 원	0 원	
향치비	0 원	0 원	
기타손배금	0 원	2,225,000 원	
비급여치료비	0 원	0 원	
합	31,775,490 원	책임제한 50%	27,660,742 원



II. 수임사항

□ 손해사정 업무의 수임

- 위임인 : (주)00000
- 주 소 :
- 연락처 :
- 산재관리번호 :
- 사고 당사자와의 관계 : 사용자



□ 손해사정 업무내용

- 상기 손해사정업무의 수탁과 관련하여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규정한
-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배상액의 사정 등



Ⅲ. 사고 및 손해발생의 조사

1. 기초사실 사고사항

- 사고일시 : 2025년 00월 00일(화) 00:00분경
- 사고장소 : (주)OOOOO 사업장 내
- 사고내용 : 피해근로자 000(000000-1*****)은 상기일시·장소에서 생산작업 완료 후 마무리 물청소 중 제품 이송용 소형로터리 이송기에 물청소 작업 중 회전날에 손가락이 끼어 사고 발생하였고, '25년 00월 00일 집도의가 발행한 후유장해(AMA)평가상, 좌) 1수지 정상범위(원위지골 골결손)
2수지 P.I.P 굴곡 50°/100° (환자의 운동범위/정상범위 - 이하동일), 신전 0°/0°
D.I.P 굴곡 0°/70° 신전 0°/0°
3수지 P.I.P 굴곡 90°/100°, 신전 0°/0°
D.I.P 굴곡 70°/70°, 신전 0°/40° 로 평가되었음 [보험급여확인원 및 후유장해진단서 참조].

2. 치료 경과

병원명	일시	내용
OO병원	'23.03.07.	• 제1,2,3수지 절단에 대해 접합술 시행
	'23.03.08.	• 혈전증으로 혈관이식술 시행
	'23.04.12.	• 부분 괴사로 변연절제 및 2수지 복부피판술 시행
	'23.04.26.	• 피판 분리술 시행
	'23.06.09.	• 제1수지 원위지골 골편 제거술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CD 코드 : S68.2(둘 이상의 손가락만의 외상성 절단) S62.671(손가락뼈의 다발골절, 개방성) • 보험급여 지급확인원의 요양승인 상병명은 '좌측 제1수지 원위지 절단', '좌측 제2수지 근위지 절단', '좌측 제3수지 중위지 절단'이며 승인기간은 '23년 3월 7일부터 '24년 1월 26일까지 총 입원일수 : 43일, 총 통원일수 : 225일로 산정함. 		



3. 장해평가 비교

구분	산재법	맥브라이드 평가	비고
내용	<p>• 산재법 평가는 신체적 장애를 의미하고, 맥브라이드식 평가는 노동력의 상실을 의미하므로 달리 적용해야하나, 본건은 영구적 산재장해 기준으로 평가하여 산정합니다.</p>		
ROM	<p>• ROM (환자의 운동범위/정상범위) 2수지 P.I.P 굴곡 50°/100° 신전 0°/0° D.I.P 굴곡 0°/70° 신전 0°/0° 3수지 P.I.P 굴곡 90°/100° 신전 0°/0° D.I.P 굴곡 70°/70° 신전 0°/40°</p>	<p>• 제출된 AMA장해평가는 Active ROM(능동각 평가)로 맥브라이드 평가는 Passive ROM(수동각 평가)의 방식으로 평가하여야함. 제출된 ROM을 P.ROM으로 가정하여 평가함. 접합된 관절각 직 맥브라이드표 [2수지]V-A-2 & VI-B-1(각 노동력 상실률 4%) ∴ 병합장해율 $4 + (100 - 4) \times 4\% = 7.84\%$</p>	<p>• 산재 초과 손해배상 민사사건은 국배법이 아닌 맥브라이드 기준을 적용</p>
결과	<p>• 최종 판정 장해등급 12급 -1수지 장해 제13급제6호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 + 2수지 장해 제13급제8호(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장해등급의 1등급 상향 조정</p>	<p>• 좌) 제1수지 원위지골 골결손 - 말절골의 1/2미만의 골결손으로 보여지므로, 장해 해당없음. • 제3수지 굴곡이상 없는 과신전으로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 불가함. • 제2수지 P.I.P 및 D.I.P 운동제한 노동력상실률 각 4%로 평가하고 영구장해로 평가하며 협의에 이르지 못할 시 신체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p>	



4. 향후 성형추정비용(일반수가) - [예비적 계정]

계정	금액	계정	금액	비고
진찰료	-	성형술(cm당)	-	• cm당 100,000원 적용
투약료(회당)	-	주사료(회당)	-	
마취료	-	특수검사	-	
입원실료	-	처치비	-	• 입원실료 日당 57,660원 • 처치비 1.5만
흉터연고	-	합		-

※ 금 계정은 성형추정에 관한 부분만 산정합니다. 제출된 향후치료비(성형추정)에 관한 서류가 전무함으로 추후 제출된 성형추정서의 금액으로 손해배상금액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금 손해액으로는 산정치 아니함.

5. 직업 및 소득현황

피재근로자 000은 귀사에서 생산작업자로 근무하였고 '23년 1월 16일 입사하여 사고시점 동년 3월 7일 귀사에서 총 34일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총 임금 4,077,233원을 지급받아 소득현황은 일당 세전 119,918원¹⁾으로 적용합니다.

IV. 관계법규 및 보상책임의 판단

□ 법률상 배상책임 조항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7500판결(손해배상(산)) “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의 산정기준은 사고 당시의 실제수입이며,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이 산정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750조(일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소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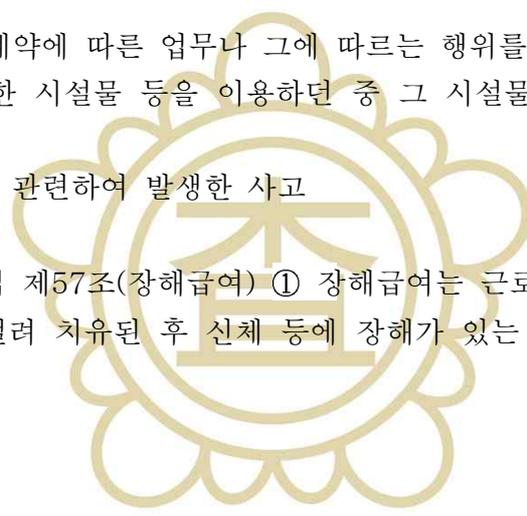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마.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V. 손해액 사정의견

1. 손해액 사정의 기초 사실

가. 가동연한 및 현실소득액

피해자 사고 나이 26년 2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적용합니다.²⁾ 일실소득 평가기준 세전 119,918원으로 적용합니다.

나. 장애 관련 사항

수지관절 장애 감안하여 장애인단평가일을 산재요양기간이 종료된 2024년 1월 26일로 기산하며 상실수익액 계산시 호프만계수는 만 65세까지 481개월 'H=263.6667'으로 최종 한도 'H=240'으로 산정합니다.

신체감정의의 감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재판과정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재근로자의 경우 신체적 장애가 아닌 노동력상실을 평가를 감안하여야 하고 제3수지 접합 이후 비록 과신전이 있으나 골공에는 이상이 없고 맥브라이드 평가방식상, 과신전의 장애판정기준은 전무한 바, 제2수지의 운동제한에 관하여 신체감정을 시행한다면 장애기간은 영구, 맥브라이드표 수지 [2수지]V-A-2 & VI-B-1(각 노동력상실률 4%) 병합장애율 $4 + (100 - 4) \times 4\% = 7.84\%$ 로 예상됩니다. 이견이 있을 경우 필히 신체감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 과실상계

과실의 상계를 논하기에 앞서 사고의 객관적 발생 이유 및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해태에 관한 피재근로자의 주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재근로자 000의 순수 본인 과실로 인한 사고라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에 따라 피재근로자의 업무상 부상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사용자의 면책 항변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법원의 기초를 보았을 때, 피재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³⁾ 그러나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은 무과실책임

2)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



을 견지하나, 재해보상의 초과분에 관하여는 민법의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바, 피재근로자 또한 본인의 신체를 보호할 소극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 건에서는 최근 유사 하급심 판례⁴⁾를 준용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50%로 제한·평가하여 산정합니다.

2. 손해액 사정내역

가. 위자료

맥브라이드 평가표 수치 [2수지]V-A-2 & VI-B-1(각 노동력상실률 4%) 병합장해율 $4 + (100 - 4) \times 4\% = 7.84\%$, 장해기간 영구 적용하여 $100,000,000\text{원}^5) \times 7.84\% = 7,840,000\text{원}$ 으로 적용합니다.

나. 휴업손해(입원)

• '23.03.07 ~ '24.01.26 : $119,918\text{원} * 43\text{일} = 5,156,474\text{원}$
- $19,551,680\text{원(산재공제}^6)) = \text{공제 후 금액 '0'원}$

다. 상실수익액

• $(119,918\text{원} \times 22\text{일}) * 7.84\% * 240(\text{H}) = 49,640,295\text{원}$
- $12,223,810\text{원(산재공제)} = \text{공제 후 금액 } 37,416,485\text{원}$

라. 간병비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카351 전원합의체판결.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아니하고 재해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은 물론,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참작하여 그 보상 책임을 면하거나 보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점에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은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재해보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광주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나57369 판결[손해배상(산)]

5) 서울중앙지법 교통사고, 산재사고 위자료 산정 기준.

6) 헌법재판소 2005. 11. 24. 2004헌바97.

“이중전보의 방지를 위하여 청구권 간의 경합을 인정하되 그 보상 또는 배상액 간의 공제를 통하여 이를 조정하는 경합조정방식을 채택하였다.”



• 입원기간 중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아 간병비는 인정치 아니합니다.

마. 성형추정

• 미청구 금액으로 손해사정을 보류합니다.

바. 직불치료비

• 산재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명세서가 확인되어야 하나, 미청구 금액으로 손해사정을 보류합니다.

사. 기타 손해배상금

• 통원 225일 X 통원당 1만 = 225만

■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합계 : 위자료 7,840,000원 + 휴업손해 0원 + 상실수익액 37,416,485원 + 간병비 0원 + 향후치료비 0원 + 직불치료비 0원 + 기타손배금 2,225,000원 = 총계 47,481,485원

= 책임제한(50%) 후 최종금액 = (37,416,485원 + 2,225,000원) X 50% = (19,820,742원 + 위자료 7,840,000원) = 27,660,742 원

3. 손해사정 결과 및 의견

귀사 (주)00000는 피재근로자 000과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로 사고당일 사업장 내 기계 및 설비는 항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피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피재근로자 000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



하였고 물림점을 가진 회전기계를 사용에 제공할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에는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축이 회전하는 기계를 취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의 손에 밀착이 잘되는 가죽 장갑 등과 같이 손이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장갑을 사용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를 해태한 사실은 민법 제390조, 동법 제750조, 동법 제758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95조의 위반이 성립되어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사용자의 면책 항변을 극히 소극적으로만 인정하므로 피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재해보상을 초과하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피재근로자의 소극적 주의의무도 고려하고 있으므로 책임의 제한을 두어 최종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단, 전문의의 감정이 필요한 수지 노동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성형추정) 추정에 관한 내용은 필히 감정절차가 필요하며 본 사정서에서는 경험칙상의 사건만 전달하였음을 분명히 합니다.

본 손해사정서는 (주)00000가 제공한 각종 기록을 토대로 본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소득, 정년 및 과실 등을 기초한 후, 판례 등을 참고하여 재판에 의할 경우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상기 손해액 사정금액은 피해자의 손해액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신체감정 및 과실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위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본 사고가 원인이 되어 손해사정시점에 예기치 못한 추가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사정을 유보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손해사정사회**



본 사정서 양식은 보험업법 제 178 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손해사정사회의
정회원 손해사정사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 정회원 검색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